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5

발의연월일: 2020. 6. 18.

발 의 자:이인영·한병도·용혜인

박 정・김경만・허 영

양정숙 · 전혜숙 · 기동민

조오섭 · 안규백 · 최종윤

윤관석 · 양이원영 · 이 재정

이원택 · 황운하 · 권인숙

인재근 의원(19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의무 규정만 두고 있을 뿐, 노약자·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 함.

이에 노약자·장애인 등의 주민소환투표 권한 행사와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등을 위한 거소투표를 제외한 부재자투표는 폐지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「공직선거법」의 개정내용에 따라,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소환투표에서도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시행됨을 명시함(안 제4조제2항·제3항).
- 나.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있도록 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.
- 다.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거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수 없는 자는"을 "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"으로, "부재자신고를"을 "거소투표신고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「공직선거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(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)"를 "주민소환투표인명부(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·확정과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5장(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 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 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주민소환투표공보)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안의 내용,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, 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(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「장 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)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책자형 주민소환 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 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·작성방법·배부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27조제1항 전단 중 "제17조 내지 제19조"를 "제18조, 제19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·군·구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하며"를 "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(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)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며"로

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4호 중 "주민등록지인 시·군·구"를 "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(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)"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4조(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 제4조(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 성 및 확정) ① (생 략) 성 및 확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주민 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직선거법 . 제38조제4항제1호부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| 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. -----거소투표신고를-----.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·확정과 인명부의 작성·확정과 제2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및 고의 절차, 부재자신고인명부의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작성 등에 관하여는 「공직선 거법 1 제37조 내지 제46조를 제5장(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준용한다. 이 경우 제9조의 규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-----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와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「공직선거법」 제46조의 규정| 주민소환투표인명부(거소투표신 고인명부를 <u>포함한다)</u>-----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(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) 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

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 음날까지 하여야 한다.

제5조(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 제5조(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 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·계도) ① (생략)

<신 설>

② • ③ (생 략)

<신 설>

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·계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 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 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소 접근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 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

제12조의2(주민소환투표공보)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 환투표안의 내용, 주민소환투표 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, 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 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 장애주민소환투표인(주민소환 투표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 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 각장애인을 말한다)을 위한 주 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 여야 한다. 다만, 책자형 주민 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 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 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 ③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공보 의 규격·작성방법·배부시기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등) ① ---------제18조, 제19조-----

관"은 "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" 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은 "관할선거관리위원회"로, "주민 투표"는 "주민소환투표"로. "주 민투표사무"는 "주민소환투표 사무"로, "주민투표청구권자"는 "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"로, "주 민투표청구인대표자" 및 "청구 인대표자"는 각각 "주민소환투 표청구인대표자"로, "주민투표 청구"는 "주민소환투표청구"로, "주민투표청구서"는 "주민소환 투표청구서"로, "청구인대표자 증명서"는 "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"로, "주민투표안"은 "주 민소환투표안"으로, "지방자치 단체의 조례" 및 "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"는 각각 "대통 령령"으로 보고. 같은 법 제10 조제1항 중 "제9조제2항"은 "제7조"로, 같은 법 제12조제1 항 중 "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" 는 "시·도지사"로, "자치구·시 또는 군"은 "시장·군수·자치구 의 구청장, 지역구시·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"으로,

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"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의하여"는 "관할선 거관리위원회는"으로 본다.

② 「주민투표법」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<u>부재자투표소에</u> 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 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·군·구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하며,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.

| ② |
|-------------------|
| 주민소환투표가 |
| 실시되는 구역(지역구지방의회 |
| 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. |
| 시·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) 밖 |
| 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 |
| 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 |
| <u>며</u> |
| |